

의안번호	2200430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5.
추 계 번호	24F079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
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대해 적용 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6년 0.8억원, 2027년 0.8억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.7억원(연평균 0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계	연평균
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104조의26)	-0.8	-0.8	-1.7	-0.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26 (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)	○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2년 연장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, 시공자등이 포기한 채권가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6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4조의26 (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최근 3년(2021~2023년(전망)¹⁾)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, 징수기준을 고려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6~2027년간 발생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추계방법

-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년 기준 감면액 전망은 1.0억원 수준

[표 2]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 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(전망) ¹⁾	'21~'23년(전망) 연평균 감면액
감면액	0.5	1.0	1.0	0.8

주: 1)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3년 감면액 숫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3년 감면액 숫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- (세수효과)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최근 3년(2021~2023년(전망))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
감면액 전망	0.8	0.8

(2) 추계결과

-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대해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6년 0.8억원, 2027년 0.8억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.7억원(연평균 0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계	연평균
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104조의26)	-0.8	-0.8	-1.7	-0.8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